

의안번호	제 390 호
의 결 연 월 일	2012년 9월 일 (제314회)

**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  
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**

발 의 자	김재종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12년 9월 20일

## 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
의안 번호	39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2년 9월 20일  
발 의 자 : 김재종, 김동환, 최진섭,  
이광희, 하재성, 박상필,  
장병학

### □ 주 문

도정 및 지방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붙임과 같이 요구 합니다.

### □ 제안이유

제3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 및 지방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(대집행부질문)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지방교육행정에 반영하고자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 제73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.

### □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
-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 제73조

붙임 : 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

## 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

제3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 및 지방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문(대집행부질문)을 하기 위하여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 제73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.

- 출석일시 : 2012. 10. 9.(화), <1일간>
- 출석장소 :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
- 출석이유 : 도정 및 지방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
- 출석대상
  - 충청북도지사, 충청북도교육감
  - 「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도 및 교육청의 실·국·원·단·본부장 이상 간부공무원과 4급 이상 공무원 중 답변대상자